

변경대비표

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필승 코리아 증권투자신탁[주식]

2. 효력발생일 : 2023년 10월 18일

3. 정정사유 :

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
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(23.48% → 19.40%, 2등급 유지)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연금계좌 세액공제)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02.20 시행) 반영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[요약정보]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대상 - 증권의 대여 - 증권의 차입 <신설>	가. 투자대상 - 증권의 대여 ^{주3)} - 증권의 차입 ^{주4)} <u>주3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(증권의 대여 등)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u> <u>·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.</u> <u>·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u> <u>주4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u>
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다. 기타위험 <신설>	다. 기타위험 - 증권대차 거래 위험 <u>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이익 증대 등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합니다.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,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</u>

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<u>23.48%</u>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p>	<p>히 낮으나,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<u>19.40%</u>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p>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<p>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	<p>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<u>연 1,800만원 한도</u>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연금계좌세액공제</p>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만원</u>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만원</u>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1억원</u>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300만원</u>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<신설></p>	<p>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<u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</u>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연 1,800만원</u>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, 전환금액이라 한다) <p>연금계좌세액공제</p> <p><u>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만원</u>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만원</u>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<삭제>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<p>[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]</p>

	<p>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<u>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</u></p>	<p>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<u>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</u> 1.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: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% 2.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: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%</p>
	<p>분리과세한도 <신설></p>	<p>분리과세한도 <u>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[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]</u></p>
	<p>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<u>개인회생절차 개시</u> <u>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</u></p> <p>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p>	<p>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<u>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</u> <u>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u> <u>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</u>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p>
<p>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5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	<p>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.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p>	<p>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.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p>

	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- <삭제>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<p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<p>1. 재무정보</p> <p>1) 요약재무정보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1. 재무정보</p> <p>1) 요약재무정보</p> <p>주5)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</p> <p>주6)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</p> <p>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</p> <p><주식의 매매회전율></p> <p>결산일 기준으로 갱신</p>
<p>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	<p>-</p>	<p>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</p>
<p>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내역</p>	<p>-</p>	<p>결산일 기준으로 갱신</p>

변경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필승 코리아 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효력발생일 : 2023 년 10 월 18 일
3. 정정사유 :
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운용현황 및 운용실적 등 갱신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